

공시일자	제목	공시사항
2009년 01월 16일	[투자설명서 변경] 도이치 아시아 증류형 채권혼합 2호	<p>변경내용: 투자설명서 갱신 적용일 : 2009년 1월 9일</p> <p>*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 소개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2009년 01월 16일	[투자설명서 변경] 도이치 더블 드래곤 주식혼합 / 채권혼합	<p>해당 펀드: 도이치 더블 드래곤 주식혼합투자신탁 자 1 호 도이치 더블 드래곤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1 호</p> <p>변경 내용: 채권형 모 투자신탁 (도이치 마스터 코리아 채권투자신탁)의 약관 변경 (투자대상 등급변경)을 반영 적용일: 2009년 1월 9일</p> <p>*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소개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2009년 01월 16일	[약관 및 투설 변경] 도이치 아시아 증류형 채권혼합 1호	<p>변경내용: 투자대상 등급변경 (채권: A- 이상, 어음: A2 이상) 적용일 : 2009년 1월 9일</p> <p>*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소개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2009년 01월 16일	[약관 및 투설 변경] 도이치 코리아 채권 1-1	<p>변경내용 : 환매연기 후속조치로 인하여 보수 등이 변경 적용일 : 2009년 1월 9일</p> <p>*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약관 변경 대비표 및 상품소개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약관변경 대비표

도이치 아시아 종류형 채권투자신탁 1호

변경 전	변경 후
<p>제 36 조(투자대상등) ① 생략</p> <p>1. 생략</p> <p>2.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0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3. 생략</p> <p>4. 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등급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p>	<p>제 36 조(투자대상등)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등급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p>

약관변경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제 1 조 (목적등)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u>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은 2008년 11월 4일 환매가 연기되었으며, 환매연기 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 해소되는 경우 제 26 조제 8 항에 의해 환매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 3 조 (정의)	생략 1. “ 수익자 ” 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과 동일 1. “ 수익자 ” 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u>단, 2008년 11월 3일을 기준으로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 도이치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호 」의 수익자만을 대상으로 한다.</u>
제 19 조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u>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의 공고·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u>
제 26 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 ⑦ 생략	① ~ ⑦ 현행과 동일 ⑥ <u>제 6 항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자산 등의 매각 또는 만기보유 등으로 발생한 현금(이하 “ 분배금 ” 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1 조 내지 제 25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1. <u>지급액: 발생한 분배금 중 자산운용회사가 지급기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수익증권 좌수 보유비율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u> 2. <u>지급일: 자산운용회사가 정한 날</u> 3. <u>자산운용회사가 분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배금 지급일 이전 제 1 영업일까지 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한다.</u>

	변경 전	변경 후
제 36 조 (투자대상등)	① 생략 1 ~ 9. 생략	① 현행과 동일 1 ~ 9. 현행과 동일 <u>10. 제 1 호 내지 제 9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연기자산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 37 조 (투자한도)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동일 <u>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연기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한도 및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 38 조 (운용 제한)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동일 <u>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 40 조 (투자신탁보수)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전 종류형 공통) 가. 자산운용회사 보수율: 연 1000 분의 0.00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 분의 0.00 다. 수탁회사 보수율: 연 1000 분의 0.0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 분의 0.00
제 48 조 (투자신탁 재산의 회계감사)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동일 <u>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u>
제 51 조 (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동일 <u>⑥ 제 3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u>